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676
------	------

2026. 6. 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5월 26일, 이효진 의원(찬성자 12명)

나.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6 1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효진 의원)

1. 제안이유

-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예술 창작물의 무단 학습·활용 등 예술인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서울시가 예술인 보호 차원에서 생성형 AI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 추가 (제3조제5항 신설) - 시장이 생성형 AI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 나. 저작권 보호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의 사업 범위에 포함함.
- 다. AI 활용 예술지원사업 표시제 도입 (제5조의2 신설) - 예술지원 사업에 생성형 AI가 활용된 경우 이를 표시하는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윤희)

- 동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술인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예술인의 자유롭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5조(지원사업)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표시) 시장은 예술지원사업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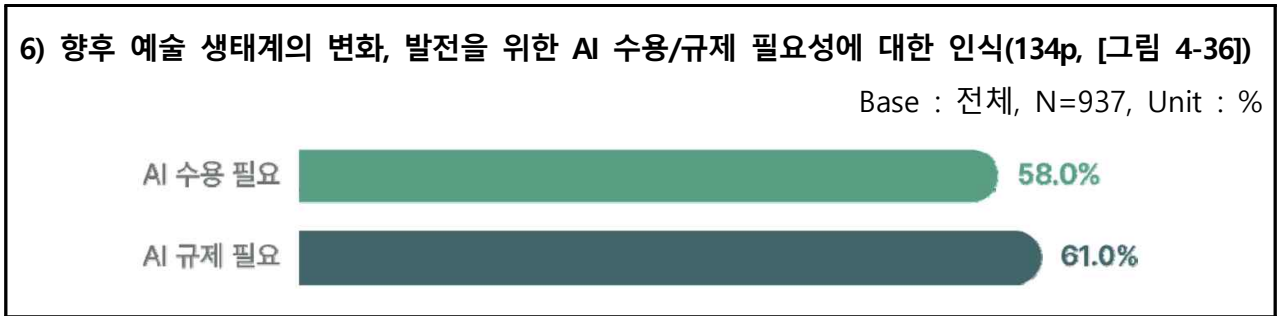
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예술계 주요 현황

- 오늘날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와 개인의 일상에 변혁을 일으킨 ‘생성형 인공지능(GAI,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은 입력된 데이터를 학습·추론·재구성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으로, 인간 고유의 개성과 감성에 기반한 창조적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문화예술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우수한 사용 접근성·용이성·범용성·효율성 등의 다양한 강점을 지닌 생성형 인공지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조·확장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이 없거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이 있어 문화예술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문화 향유¹⁾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데이터 수집·학습·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시에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 및 작품에 대한 권리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비윤리적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일부 예술인의 경제적·심리적 손해에 그치지 않으며, 인간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가치 인식을 약화시킴으로써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어 시민의 문화적 권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모든 사람의 일상 속 창조적 활동을 지향하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실현의 수단으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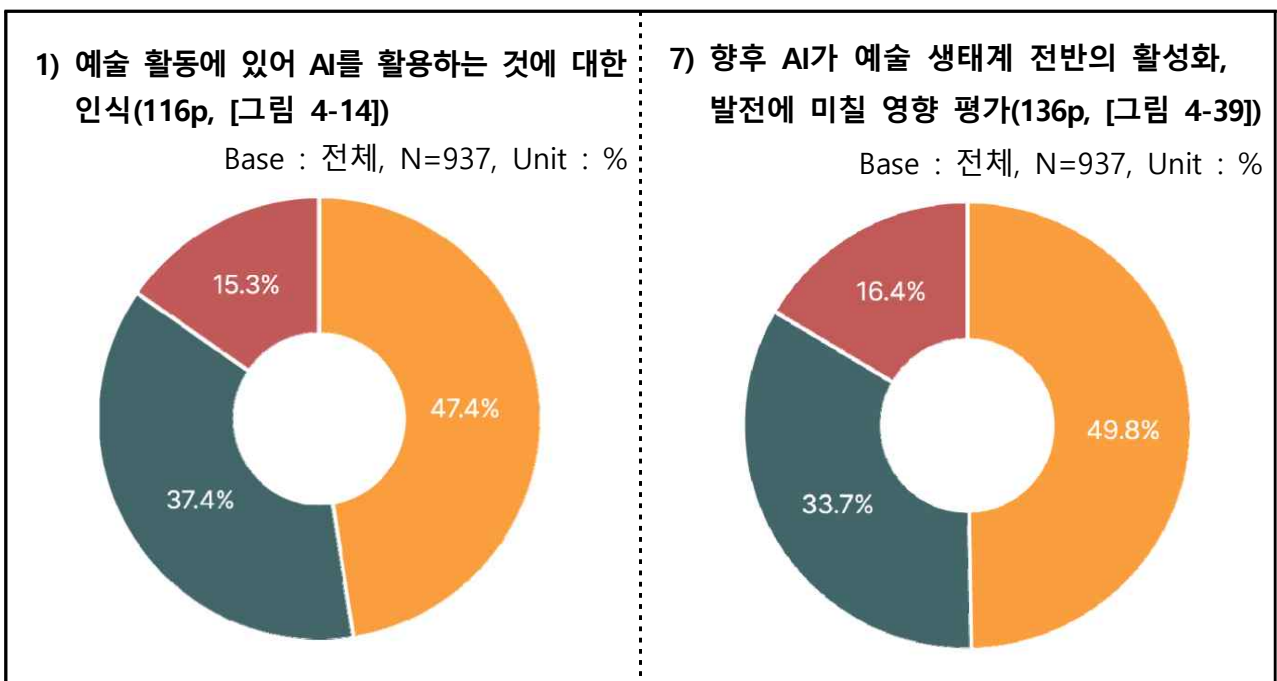
-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각 예술 분야 종사자 9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²⁾에 따르면, 향후 예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의 수용 및 규제에 대하여 복합적인 견해가 있다고 보임.

< 인공지능 수용/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



- 또한 ‘인공지능이 예술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및 ‘예술 활동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관련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중립·부정 응답의 합계와 견주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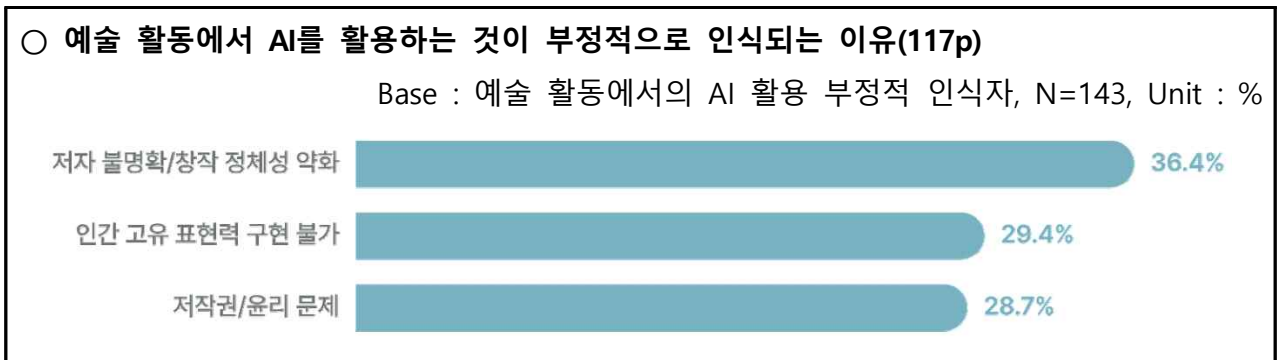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 등 >



2) 「AI 시대 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대응과제」(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5. 12.)

- 다만 예술 활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자의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인간의 창작 정체성 약화가 주요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유 >



- 이에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을 제정(2025. 1. 21.) 및 시행(2026. 1. 22.)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균형 있게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³⁾을 수립하거나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 윤리 기반 조성, 활용 능력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마련하고 있으며⁴⁾, 이 중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 기반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 12. 27.),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2026. 2. 26.) 등

4)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3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특히 학습데이터의 수집·이용의 범위,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성 및 창작 기여도 판단 기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산업 육성과 권익 보호 간의 균형 등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다. 개정안의 타당성

(1) 예술인 보호 기반 마련 책무 신설(안 제3조제5항)

- 안 제3조제5항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 및 국민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문화 영역 등에서의 대응 시책 마련 등의 책무를 구체화한 조문으로 볼 수 있음.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시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20.>[시행일: 2026. 7. 21.]

- 이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특성상 상위법령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도록 규정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 법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저작권 보호 지원 사업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4호)

- 안 제5조제1항제4호는 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한 저작권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u> 5. (현행 제4호와 같음)

- 이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5)의 포괄적 지원 개념을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시한 것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법률 지원이나 라이선싱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겠음.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표시 신설(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는 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된 예술지원사업에 대하여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표시) 시장은 예술지원사업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 제8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문장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크게 ①시장이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 ②예술인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창작한 결과물에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 ③시장이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기준을 제공하려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의 핵심 취지가 ‘예술인의 권익 보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시장이나 예술인으로 하여금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장이 예술지원사업의 대상자인 예술인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기준을 제공하려는(③) 목적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겠음.
 - 해당 조문을 시장의 직접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①)로 해석하면, 이러한 표시 조치가 어떠한 권익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지 명확하지 않고, 만약 인공지능 사용 여부 표시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예술인이나 예술지원사업에 국한하여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할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또한 조문의 의도를 예술인이 시 지원을 받아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려는 것(②)으로 해석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후적 조치가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예술인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함에 따른 낙인효과 우려 등으로 예술 활동의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인공지능 사용 기반을 저해하게 됨.

- 이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AI 활용 공모사업 지원신청 및 창작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하여 예술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술인들에게 기초적인 원칙⁶⁾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예술지원사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지원사업 공고 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간략한 권고사항을 기재하고 있음.

< 2026년 서울문화재단 공고 안내문 中 >

- ▶ 기획(지원신청서 작성) → 창작 → 발표 → 성과관리(성과보고서 작성)의 전 과정에서, AI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윤리 문제에 유의
-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생성형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으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음- AI 활용 시, 사용 사실 작성 권고 ex) 사용한 AI 서비스 및 모델·사용 범위·활용 방식 등

- 다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⁷⁾의 연구를 참고할 때, 인공지능 활용 기준이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예술계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⁸⁾ 것으로 확인되어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시장이 예술지원사업 추진 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집행기관의 장점을 유의미하게 발휘할 수는 방안이라고 보임.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content/6121>

7) 「AI 시대 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대응과제」(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5. 12.)

8) 향후 AI 발전에 대한 예술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AI 활용 기준 마련(25%)’, ‘예술가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정립(22%)’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음.(140p)

- 특히 예술 분야나 활용 형태 등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예술인의 인식과 수용의 태도 및 활용의 적정성은 다르게 나타남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소 미흡⁹⁾하다는 점은, 다양한 예술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사항들이 있음을 시사함.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 등 >

○ 분야별 AI 수용 태도와 활용 적극성의 매트릭스 분석(146p, [그림 4-44])

Base : 전체, N=937, Unit : %, 연구자 작성



- 따라서 개정안의 일부 중의적 표현으로 인한 해석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9) 분야별 AI의 인식과 수용의 태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여건 차이도 존재하지만 활용 방식, 윤리와 법적 우선 과제에 대한 개별적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략) 활용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중략) 향후 예술 분야별 AI의 접근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검토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I 시대 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대응과제』 148p)

< 수정제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략)</p> <p><u><신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시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 2조 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⑤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5조(지원사업)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표시) 시장은 예술지원사업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제5조(지원사업)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u>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기준)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술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u></p>

의안번호
3676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이효진 의원(1인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발전으로 예술인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예술인 보호차원에서 생성형 AI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 생성형 AI 관련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 ○ 예술지원사업에 생성형 AI 활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는 기준 수립 근거 마련 		
추진경과	○ 개정조례안 발의 : '26.5.26.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계 내 윤리적이고 공정한 생성형 AI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 지원 및 예술지원사업 내 AI 활용 표시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저작권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특이사항 없음. 		
대응방안	○ 원안가결 검토의견으로 해당사항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노은영(☎2133-2552)	담당 최종규(☎2133-255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윤리적이고 공정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음.
- 다만 조문에 대한 해석상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내용

- 시장이 각종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의2).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7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기준)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술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략)</p> <p><신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시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⑤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생략)</p>	<p>제5조(지원사업) 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5조(지원사업)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 사업의 표시) 시장은 예술지원 사업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 사업의 기준)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술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기준)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술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